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 보감회, 개정 보험회사관리규정 시행

-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는 보험산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<보험회사관리규정>을 개정하고 신보험법 발효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시행함.
  - 보험회사 및 지점 설립, 경영 관련 규범, 보험산업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회사관리규정은 첫 시행된 2000년 이후 2002년, 200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개정임.
  - 최근 개정 보험법 발효와 함께 시행된 이번 규정과 관련해 보감회 당국자는 개정 보험법이 표방한 원칙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힘.
- 개정된 규정은 보험회사 및 영업지점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시장진입 문턱을 높이고, 보험회사의 내부관리시스템 구축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임.
  - 이번 규정에서는 최근 보험회사의 영업지점 설립이 크게 활성화(현재 중국에는 약 4만 여 개의 영업지점이 등록)되어 감독기관의 통제력에 한계가 보이자 업계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되, 이전보다 강화된 내부관리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음.
  - 개정 규정에 따르면, 보험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주주는 최근 3년간 중대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, 최소 2억 위안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법률, 행정법규 및 보감회 규정 모두를 준수해야 함.
  - 영업지점 설립의 경우, 이전에는 전년도에만 지급준비금이 충분하면 지점 설립이 가능했지만, 이번 규정에서는 이 외에도 직전 2분기 연속으로 규정에 명시된 지급준비금 이상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도록 함.
  - 또한 보험회사는 영업지점 관리에 있어서 일정 이상의 인원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,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정직원 신분으로 의무화 하는 등 내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항들이 다수 신설됨.
  - 이 밖에도 보험가입자,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층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음.

(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· 중국증권보, 9/28)